

집중이수및유연학기제시행세칙

제정 2021. 3. 1.

개정 2024.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 학칙 제8조 제4항에 따른 집중이수제 및 학칙 제7조 제4항에 따른 유연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집중이수제”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별 교과목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제반 수업의 형태 및 제도를 말하며, “유연학기제”란 학칙 제7조 제1항의 학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3학기 이상의 다학기제 및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 실습학기, 취업학기 등을 말한다.

제3조(개설대학 및 학과) 개설교과목은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으로 하되, ‘집중이수’, ‘실습교과’ 교과목을 표시하여 계획된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운영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정해진 ‘집중이수’, ‘실습교과’ 교과목이 아닌 경우 교과목 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시간 또는 학기운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유연학기 신청 및 절차) ① 유연학기(실습학기, 취업학기 등)를 희망하는 학과는 교육과정인증센터에 교육과정 심의절차에 따라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해당 학년전체가 아닌 일부 학생의 운영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에 따라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집중이수 신청 및 절차) ① 집중이수를 희망하는 교과목의 담당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1. 집중이수제 개설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수요를 사전 파악한다.
2. 집중이수제 적용 교과목 및 담당 교원은 학과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 집중이수제 교과목 신청은 개강 전까지 교무혁신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개정 2024.3.1.)
4. 총장은 집중이수제 교과목 개설을 수강 신청 전까지 허가한다.

제6조(교과목 개설 등) ① 평일 주·야간시간에 한하여 개설가능하며, 주말 수업의 개설은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② 전공필수과목은 모든 수강대상 학생의 동의를 얻어 개설할 수 있다.

③ 집중이수제 개설교과목 수업 기간은 학기 12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④ 교원의 집중이수제 개설 및 참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제한한다.

1. 집중이수제 교과목 수업의 경우 1일 6시간(이론을 포함한 실험·실습시간의 경우 최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 주말 수업 또는 학생들의 수강신청 중복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⑤ 집중이수제 운영 포기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손된 수업은 보강하여야 한다.

⑥ 수업운영은 허가된 학사일정 기간에 따른다.

⑦ 집중이수 교과목 개설의 목적인 각 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총장은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1. 연속적인 수업으로 집중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수업
2. 집중수업으로 학습의 창의적 수업과 효율성을 높이는 수업

제7조(학적변동에 따른 성적처리 및 환불처리 등) ① 휴학 등 학적변동에 의한 성적처리는 수업일수를 산정하여 처리한다.

② 환불처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기준에 따른다.

제8조(그 밖의 사항) 집중이수 및 유연학기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